【청약거래약관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】

개 정 전	개 정 후	비고
제 15 조【관할법원】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	제 15 조 【관할법원】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	금융소비자보호법
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	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	개정에 따른
『민사소송법』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.	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	관할법원'조문
	·무선·화상통신·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	변경
	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	
	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 다만, 제소 당시 고객	
	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	
	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「민사	
	소송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	
	부칙	부칙 추가
	이 약관은 2025년 8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.	